논문집 발간 관련 제규정

-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기고요령
- (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 규정
-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집 발간 규정
- (사)한국병무정책학회 윤리 규정

대한민국 병무정책 고도화를 위한
군인적자원개발(MHRD) 허브 구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Korean Military Human Resources Policy Association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기고 요령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 원고 제출 요령

1. 원고는 병무정책·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 논문집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후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원고는 훈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매(40자 25행)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초과한 경우 별도규정에 따른다.
3. 원고는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원고의 제출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 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할 경우, 심사위원장 또는 학회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원고 제출시에는 소정의 심사료(30.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5. 원고제출자는 논문심사 및 게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논문투고신청서 양식의 내용대로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한.영문)과 소속기관 및 직위, (학회 논문집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전화(직장, 이동전화), E-mail 주소 등을 기재하여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투고 제출서류는 논문 원본, 심사용 논문(이름, 소속, 직책 삭제), 투고신청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5개 파일) 홈페지에 제출한다. (별지 1.2.3 참조)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7. 원고는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제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 국문초록(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2. 원고의 번호체계는 Ⅰ, 1, 1), (1), ① 등으로 한다.
3. 표 및 그림번호는 각각 < >(위에 표기)와 [ ](아래에 표기)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예: <표 1-1>, [그림 3-3]).
4. 원고의 본문 주, 참고문헌 등은 다음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 또는 영문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 원고작성의 세부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집 용 지			문 단 모 양			글 자 모 양	
용지여백	위쪽	20	여백	왼쪽	0	글꼴	함초롱바탕
	아래쪽	25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25	간격	줄간격	160	장평	95
	오른쪽	25		문단위	0	자간	-5
	머리말	15		문단아래	0		
	꼬리말	0	첫째줄	들여쓰기	10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정렬		
				낱말간격	0		

구분	제목	부제목	이름	요약	Ⅰ	본문	1	1)	각주	표내용
크기	15	13	11	10	13	11	12	11	9	9
속성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각 주		참 고 문 헌	
문단간격	130	줄간격	150
글자크기	9	글자크기	9.5
왼쪽	0	왼쪽	0
오른쪽	0	오른쪽	0
내어쓰기	12.5	내어쓰기	35

7.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교육부 및 유관 정규학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본문 주 작성 요령

1.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 부분에 첨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정철우 외(2022: 184-185)에 의하면 .... ; Ronald O'Rouke(2022)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2023: 5-7)은...; Department of Defense(2022)의 분류에 따라...; ... Christensen(2006)과 최병욱(2022)을 들 수 있다; KISTEP(2019)의 연구에서도...; 조관호 외(2021)에서는...; 김영은(2022: 27-29)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병역법 §2①; 「연합뉴스」, 2023: 박효선, 2021; 병무청, 2022; ...을 제시하였다(예: 안석기, 2020; 강일규 외, 2018; Chalofsky, 2014: 32-33, World Economic Forum, 2016)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하였다.) 페이지 하단에 각주에서 처리한다.

○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시) :

강일규 외 (2018),「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협력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방부 (2023. 1. 11),「국방부 업무보고」.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2019),「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보고자 : 병무청 차장 김태화).

김두성 (2002), “한국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두현 (2014), “정보화시대 병무행정과 병영정보화의 실태와 발전 방안”, *The Journal of IIBC*. Vol. 14, No. 1,

김무일 (2017),「프랑스 병역제도와 정신전력 발전사 연구」, 국방정신전력원.

김현희 (2021),「병역법 개정방안 연구」, 현안분석 21-17,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정부 (2022. 7),「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명재진 (2020), “지능정보사회와 행정의 역할과 기능”,「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학원.
병무청 (2021).「병무백서 : 2019~2020년」.
채창균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채창균・백성준 편,「국가인적자원개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병학 (2020), “병무청은 1등급 기관”, 병무청 인사이드,「청춘예찬」, Vo.97, 병무청.
최유경 외 (2020),「사회적 가치 제도화(Ⅱ) :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최현우・강원석 (2018), “한국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외국 병역제도 사례들의 SWOT 분석을 중심으로”,「군사논단」, 제96권, 한국군사학회.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2011),「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구현 방안」, 병무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Asch, Beth (2004), *Looking to the Future : What Does Transformation Mean for Military Manpower and Personnel Policy?*, New York: Rand Publishing.
Bennett, Bruce W. (2005). *Future ROK Army Personnel Structure*. R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Chalofsky, N. E. (2014), “Introduction: The Profession and The Discipline”, In N. E. Chalofsky, T. S. Rocco, & M. L. Morris, *Handbook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yun, M. S., et. al. (2009), “Influencing Factors on Military Adaptation among Korean Soldi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Koo, S, (2006), “A Study on Mental Health of New Generation Soldi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Marnigart, Philippe (2003), “Restructuring of the Armed Force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the Military*, New York : Kluwer Academic / Plenum Publishers.
Rosenau, James N. (2006), *The Study of World Politics :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New York : Taylor & Francis.
Vogel, C., Zwolinsky, et. al., (2019). A Delphi Sudy to Build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Use of Big Data in Obesit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Vol. 43, No. 12.
World Economic Forum (Jan 14,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Retrieved from

[1]

투고 신청서

논제명	국 문 (한 문)			
	영 문			
집필자	성 명	한글 (한자) / 영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E-Mail			
통장	은행:	계좌번호:		

※ 논문 핵심 내용(공간 부족 시 다음 쪽 사용가능)

[2]

연구 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

1. 본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본 저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 도출 등의 논문 작성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판명될 시에 그 경중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논문집에 3년간 투고 금지**
- **한국연구재단 및 본 학회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논문 삭제**
- **부정행위 판정 후 간행되는 논집의 첫 호에 부정행위 사실 공지**
-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을 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약서에는 원고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불가할 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대표로 서명하여 우편 또는 스캔하여 한국병무정책학회로 발송해야 함.

※ 이메일로 전송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 자	이 름	서 명	소 속	연락처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투고일 : 년 월 일

(사) 한국병무정책학회 귀중

[3]

저작권 이양 동의서

❖ 본 논문이 「한국병무정책연구」에 출간될 경우에 그 저작권을 (사)한국병무정책학회에 이양하며, 국회도서관 등의 사이버 출판에 있어 아래의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권리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소유합니다. 저자는 서면 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학술적·실질적 공헌을 했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 또한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 향후 논문 서비스에서 수익발생 시 저작권 사용료는 (사)한국병무정책학회에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에는 원고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이메일로 전송시 별도의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논문 제목 :

□ 저자 서명 :

저 자	이 름	서 명	저 자	이 름	서 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제4저자		

(사)한국병무정책학회 귀중

(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심사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편집위원 자격 및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역할)

①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이 규정은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의 추천시 편집위원장은 병무정책 및 행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령 및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학회 논문집 게재 원고의 모집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 논문집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결정 추인, 논문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2조(학회 논문집 발행)

① (논문 기고)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기고요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발간 예정일 등) 「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 2회 발간한다. 발간예정일은 각년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제3조(심사 기준)

①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②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사유를 명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 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可),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 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이 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가(可) :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표현상의 일부 손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수정 게재 :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게재 불가 : 논문이 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반적,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논문집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논문심사 절차)

① (심사 논문 제출 마감) 「한국병무정책연구」의 논문 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논문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1호(6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2호(12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첫 편집 회의)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5월 10일, 11월 1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때 논문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논문심사 횟수) 논문 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자가 '수정 게재'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심사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⑤ (1차 심사) 1차 심사는 5월 20일, 11월 20일까지 완료한다.

⑥ (1차 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 이 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불가(不可)"로 확정한다.

⑦ (논문 수정지시) 수정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수정된 논문은 6월 5일, 11월 5일까지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2차 논문심사 의뢰) 다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6월, 12월 첫 주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不可)" 판정을 한 심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⑨ (2차 심사결과)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가(可),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可)"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⑩)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이 때, "게재 가(可)"에 관한 논문 판정통보서는 전화로 대치할 수 있다.

⑪) (이의 제기) 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또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⑫ (심사종료와 인쇄)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 1호(6월 30일 발행)는 6월 20일까지, 2호(12월 30일 발행)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종합 편집 및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부득이 이 기간을 넘긴 원고에 대해서는 다음 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⑬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⑭ (전자우편 활용) 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⑮ (예외사항)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⑮ (논문심사 양식) 논문 심사양식의 경우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① 논문집 발간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연, 월, 일로 명시하며, 논문저자 소개 다음의 하단에 표시한다.

② 논문접수일은 논문접수와 동시에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게재확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날짜를 표기한다.

제7조(논문의 주저자 및 공저자에 대한 처리)

①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투고시 연구자들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이후 저자는 기여도를 반영한 공동저자로 인정한다.

② 논문 투고시 연구자들이 저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시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 이양 동의서 제출)

① 논문 투고시 저자는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별지1]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정관 제17조에 의해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된 편집위원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집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은 「한국병무정책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자료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병무정책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출석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위임이 있을시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5조(학회 논문집 발행)

① 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집인 「한국병무정책연구」는 연간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게재 논문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행 2개월 이전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학회 논문집 게재 논문 심사규정)

① 「한국병무정책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병무정책학회 논문집 발간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편집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발간 회수)
본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증간할 수 있다.

제2조(접수일)
학회지에 기고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일정기한을 정해 논문기고 마감일을 공시한다.

제3조(논문 기고자 자격)
논문의 기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1인 한정)의 경우 정회원과 공동으로 기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회원은 정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제4조(게재 순서)
먼저 접수되어 심사과정이 완료된 논문부터 차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집 또는 기획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게재 편수)
매회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될 논문 편수는 15편 내외로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및 유관 정규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병무정책학회 윤리규정

(사)한국병무정책학회 윤리위원회 (2023. 1. 11) 제정

제1조(목적)

(사)한국병무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윤리규정은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 기타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병무정책·행정 및 군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회 회원은 연구·교육활동, 그리고 현장활동의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및 특히 중립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⑤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학회 회원은 연구·교육활동, 그리고 현장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4조(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표기나 인용근거가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5조(표절의 심사주체)
표절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과 협의하여 표절심의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제6조(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집의 5년 간 기고 금지
②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병무정책연구」 논문집에 표절사실의 공시
③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조치 등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